

经营者集中审查规定

(2023年3月10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67号公布 自2023年4月15日起施行)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规范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以下简称反垄断法）和《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以下简称市场监管总局）负责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工作，并对违法实施的经营者集中进行调查处理。

市场监管总局根据工作需要，可以委托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称省级市场监管部门）实施经营者集中审查。

市场监管总局加强对受委托的省级市场监管部门的指导和监督，健全审查人员培训管理制度，保障审查工作的科学性、规范性、一致性。

第三条 经营者可以通过公平竞争、自愿联合，依法实施集中，扩大经营规模，提高市场竞争能力。

市场监管总局开展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工作时，坚持公平公正，依法平等对待所有经营者。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2023년 3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67호 공포, 2023년 4월 15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경영자집중 반독점심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 및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이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경영자집중 반독점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경영자집중 위법 실시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시장총국은 업무 필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서(이하, 성급시장감독관리부서)에 위탁하여 경영자집중 반독점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총국은 위탁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심사 직원 교육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심사 업무의 과학성, 규범성, 일관성을 보장한다.

제3조 사업자는 공정경쟁과 자발적 제휴를 통해 법에 따라 경영자집중을 실시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며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장총국은 경영자집중 반독점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 공정을 견지하고 법에 의거 모든 경영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第四条 本规定所称经营者集中，是指反垄断法第二十五条所规定的下列情形：

- (一) 经营者合并；
- (二) 经营者通过取得股权或者资产的方式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
- (三) 经营者通过合同等方式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或者能够对其他经营者施加决定性影响。

第五条 判断经营者是否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或者能够对其他经营者施加决定性影响，应当考虑下列因素：

- (一) 交易的目的和未来的计划；
- (二) 交易前后其他经营者的股权结构及其变化；
- (三) 其他经营者股东（大）会等权力机构的表决事项及其表决机制，以及其历史出席率和表决情况；
- (四) 其他经营者董事会等决策或者管理机构的组成及其表决机制，以及其历史出席率和表决情况；
- (五) 其他经营者高级管理人员的任免等；
- (六) 其他经营者股东、董事之间的关系，是否存在委托行使投票权、一致行动人等；
- (七) 该经营者与其他经营者是否存在重大商业关系、合作协议等；
- (八) 其他应当考虑的因素。

两个以上经营者均拥有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或者能够对其他经营者施加决定性影响的，构成对其他经营者的共同控制。

제4조 본 규정에서 경영자집중이라 함은 <반독점법> 제25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1) 경영자 합병；
- (2) 경영자가 주식 또는 자산 취득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
- (3) 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경영자에 대하여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

제5조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받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1) 거래의 목적과 향후 계획；
- (2) 거래 전후 다른 회사의 지분 구조와 그 변화；
- (3) 기타 주주 총회 등 권한있는 기구의 의결 사항 및 의결 메커니즘, 그리고 과거 참석률과 의결 상황；
- (4) 기타 이사회 결정 또는 관리기구의 구성과 그 의결 메커니즘, 그리고 과거 참석률과 의결 상황
- (5) 기타 기업의 임원 임면 등；
- (6) 기타 기업의 주주, 이사 간의 관계, 투표권 행사 위임 여부, 행동 일치 여부 등；
- (7) 그 경영자와 기타 경영자 간 중대한 상업 관계, 합작 협의 등의 존재 여부；
- (8) 기타 고려 요소.

2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업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공동 통제가 구성된다.

第六条 市场监管总局健全经营者集中分类分级审查制度。市场监管总局可以针对涉及国计民生等重要领域的经营者集中，制定具体的审查办法。市场监管总局对经营者集中审查制度的实施效果进行评估，并根据评估结果改进审查工作。

第七条 市场监管总局强化经营者集中审查工作的信息化体系建设，充分运用技术手段，推进智慧监管，提升审查效能。

第二章 经营者集中申报

第八条 经营者集中达到国务院规定的申报标准（以下简称申报标准）的，经营者应当事先向市场监管总局申报，未申报或者申报后获得批准前不得实施集中。

经营者集中未达到申报标准，但有证据证明该经营者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市场监管总局可以要求经营者申报并书面通知经营者。集中尚未实施的，经营者未申报或者申报后获得批准前不得实施集中；集中已经实施的，经营者应当自收到书面通知之日起一百二十日内申报，并采取暂停实施集中等必要措施减少集中对竞争的不利影响。

是否实施集中的判断因素包括但不限于是否完成市场主体登记或者权利变更登记、委派高级管理人员、实际参与经营决策和管理、与其他

제6조 시장총국은 경영자 집중 분류 및 등급 검토 시스템을 건전히 한다. 시장총국은 국민경제, 민생 등 중요 분야의 경영자집중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시장총국은 경영자집중 심사 제도의 실시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업무를 개선한다.

제7조 시장총국은 경영자집중 심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기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능형 감독을 촉진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제2장 경영자집중 신고

제8조 경영자 집중이 국무원이 정한 신고기준(이하 '신고기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총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신고 후 승인 이전에는 경영자집중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경영자집중이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경영자 집중이 경쟁을 배제, 제한하거나 우려가 있다는 증거와 증명이 있는 경우 시장총국은 경영자에게 서면으로 신고 및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영자 집중이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자는 신고 후 승인 전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없으며, 집중이 이미 실시된 경우 경영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집중 시행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중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시장주체 또는 권리변경 등록 완료 여부, 고위 관리자 선임 여부, 실제 경영 의사 결정 및 관리 참여 여부, 다른 경영자와의 민감한 정보 교환, 실질적인 사업 통합 등이

经营者交换敏感信息、实质性整合业务等。

第九条 营业额包括相关经营者上一会计年度内销售产品和提供服务所获得的收入，扣除相关税金及附加。

前款所称上一会计年度，是指集中协议签署日的上一会计年度。

第十条 参与集中的经营者的营业额，应当为该经营者以及申报时与该经营者存在直接或者间接控制关系的所有经营者的营业额总和，但是不包括上述经营者之间的营业额。

经营者取得其他经营者的组成部分时，出让方不再对该组成部分拥有控制权或者不能施加决定性影响的，目标经营者的营业额仅包括该组成部分的营业额。

参与集中的经营者之间或者参与集中的经营者和未参与集中的经营者之间有共同控制的其他经营者时，参与集中的经营者的营业额应当包括被共同控制的经营者与第三方经营者之间的营业额，此营业额只计算一次，且在有共同控制权的参与集中的经营者之间平均分配。

金融业经营者营业额的计算，按照金融业经营者集中申报营业额计算相关规定执行。

第十一条 相同经营者之间在两年内多次实施的未达到申报标准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9조 매출액은 관련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내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득한 수입을 포함하고, 관련 세금 및 그에 추가되는 것은 제외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직전 회계 연도는 경영자 집중 계약 체결일의 직전 회계 연도를 의미한다.

제10조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매출액은 그 경영자 및 신고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제 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경영자의 매출액 합계여야 하나 상술한 경영자 간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자가 기타 경영자의 일부를 취득할 때 양도한 측이 그 일부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 경영자의 매출액은 그 일부의 매출액만 포함한다.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간, 또는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와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경영자간에 공동으로 지배하는 다른 경영자가 있는 경우,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매출액에는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경영자와 제3의 경영자간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매출액은 한 번만 계산하며, 공동 지배권을 가지고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 사이에 평균적으로 분배한다.

금융업 경영자의 매출액에 대한 계산은 금융업경영자의 경영자 집중 신고 매출액에 대한 계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같은 경영자 간에 2년 내에 신고기준 미달 경영자 집중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경우 1회 집중으로 간주하고, 집중 발생기간은 마지막

经营者集中，应当视为一次集中，集中时间从最后一次交易算起，参与集中的经营者的营业额应当将多次交易合并计算。经营者通过与其有控制关系的其他经营者实施上述行为，依照本规定处理。

前款所称两年内，是指从第一次交易完成之日起至最后一次交易签订协议之日止的期间。

第十二条 市场监管总局加强对经营者集中申报的指导。在正式申报前，经营者可以以书面方式就集中申报事宜提出商谈申请，并列明拟商谈的具体问题。

第十三条 通过合并方式实施的经营者集中，合并各方均为申报义务人；其他情形的经营者集中，取得控制权或者能够施加决定性影响的经营者为申报义务人，其他经营者予以配合。

同一项经营者集中有多个申报义务人的，可以委托一个申报义务人申报。被委托的申报义务人未申报的，其他申报义务人不能免除申报义务。申报义务人未申报的，其他参与集中的经营者可以提出申报。

申报人可以自行申报，也可以依法委托他人代理申报。申报人应当严格审慎选择代理人。申报代理人应当诚实守信、合规经营。

거래부터 계산하며, 그 경영자집중의 매출액은 여러 차례 거래를 합산해서 산정해야 한다. 경영자가 그와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경영자를 통하여 상술한 행위를 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항에서 2년이라 함은 제1차 집중거래 완료일부터 마지막 집중거래 합의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2조 시장총국은 경영자집중 신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정식 신고 전에 경영자는 서면으로 집중 신고사항에 대하여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안을 열거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제13조 합병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영자집중의 경우, 합병에 참여하는 각 경영자가 모두 신고의무자이다. 기타 방식의 경영자 집중의 경우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가 신고하며, 다른 경영자는 협조한다.

동일한 경영자 집중에 여러 명의 신고의무자가 있을 경우 한 명의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수탁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기타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집중에 참여하는 기타 경영자는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인은 반드시 엄격하고 신중하게 대리인을 선택해야 한다. 신고 대리인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한다.

第十四条 申报文件、资料应当包括如下内容：

(一) 申报书。申报书应当载明参与集中的经营者的名称、住所(经营场所)、经营范围、预定实施集中的日期,并附申报人身份证件或者登记注册文件,境外申报人还须提交当地公证机关的公证文件和相关的认证文件。委托代理人申报的,应当提交授权委托书。

(二) 集中对相关市场竞争状况影响的说明。包括集中交易概况;相关市场界定;参与集中的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及其对市场的控制力;主要竞争者及其市场份额;市场集中度;市场进入;行业发展现状;集中对市场竞争结构、行业发展、技术进步、创新、国民经济发展、消费者以及其他经营者的影响;集中对相关市场竞争影响的效果评估及依据。

(三) 集中协议。包括各种形式的集中协议文件,如协议书、合同以及相应的补充文件等。

(四) 参与集中的经营者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上一会计年度财务会计报告。

(五) 市场监管总局要求提交的其他文件、资料。

申报人应当对申报文件、资料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

제14조 신고 문서·자료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신고서. 신고서에는 집중참여 경영자의 명칭·주소(경영장소)·경영 범위·집중실시 예정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증 명서 또는 등록등기 증명서, 국경 외 신고인은 해당 지역 공증기관의 공증문서와 관련 인증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서명이 있는 수권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집중이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집중거래의 개요 ; 관련 시장 획정 ; 집중참여 경영자의 관련시장 점유율 및 시장에 대한 그의 지배력 ; 주요 경쟁자 및 그의 시장점유율 ; 시장집중도 ; 시장진입 ; 업계 발전 현황 ; 집중이 시장의 경쟁구조·업계발전·기술진보·혁신·국민경제발전·소비자 및 다른 경영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 집중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 평가 및 근거.

(3) 집중 협의 문서.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각종 형식의 집중 협의 문서, 예를 들어 협의서·계약 및 상응하는 보충문서 등.

(4)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집중에 참여하는 집중 경영자의 그 전 회계년도의 재무회계보고서.

(5) 시장총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문서·자료

신고자는 신고서류,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申报代理人应当协助申报人对申报文件、资料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进行审核。

第十五条 申报人应当对申报文件、资料中的商业秘密、未披露信息、保密商务信息、个人隐私或者个人信息进行标注，并且同时提交申报文件、资料的公开版本和保密版本。申报文件、资料应当使用中文。

第十六条 市场监管总局对申报人提交的文件、资料进行核查，发现申报文件、资料不完备的，可以要求申报人在规定期限内补交。申报人逾期未补交的，视为未申报。

第十七条 市场监管总局经核查认为申报文件、资料符合法定要求的，自收到完备的申报文件、资料之日予以受理并书面通知申报人。

第十八条 经营者集中未达到申报标准，参与集中的经营者自愿提出经营者集中申报，市场监管总局收到申报文件、资料后经核查认为有必要受理的，按照反垄断法予以审查并作出决定。

第十九条 符合下列情形之一的经营者集中，可以作为简易案件申报，市场监管总局按照简易案件程序进行审查：

신고 대리인은 신고인이 신청서류 및 자료의 진정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검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5조 신고자는 신고서류나 자료의 영업비밀, 미공개 또는 비밀유지 정보, 개인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를 기밀로 표시하고 신고서류, 자료의 공개본과 비공개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 서류자료에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16조 시장총국은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대해 반드시 확인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서류, 자료가 미비한 것을 발견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인이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7조 시장총국이 확인조사를 거쳐 신고서류, 자료가 법정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완비된 신고서류, 자료를 받은 날부터 이를 접수하고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영자집중이 신고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집중 참여 경영자가 스스로 경영자집중을 신고하고 시장총국이 신고문서·자료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접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자 집중은 간이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총국은 간이사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1) 동일한 관련 시장에서,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차지하는 시

(一) 在同一相关市场, 参与集中的经营者所占的市场份额之和小于百分之十五; 在上下游市场, 参与集中的经营者所占的市场份额均小于百分之二十五; 不在同一相关市场也不存在上下游关系的参与集中的经营者, 在与交易有关的每个市场所占的市场份额均小于百分之二十五;

(二) 参与集中的经营者在中国境外设立合营企业, 合营企业不在中国境内从事经济活动的;

(三) 参与集中的经营者收购境外企业股权或者资产, 该境外企业不在中国境内从事经济活动的;

(四) 由两个以上经营者共同控制的合营企业, 通过集中被其中一个或者一个以上经营者控制的。

第二十条 符合本规定第十九条但存在下列情形之一的经营者集中, 不视为简易案件:

(一) 由两个以上经营者共同控制的合营企业, 通过集中被其中的一个经营者控制, 该经营者与合营企业属于同一相关市场的竞争者, 且市场份额之和大于百分之十五的;

(二) 经营者集中涉及的相关市场难以界定的;

(三) 经营者集中对市场进入、技术进步可能产生不利影响的;

장 점유율의 합이 15% 미만, 상하류 시장에서 집중 참여 경영자의 시장 점유율이 모두 25%보다 미만, 동일한 관련시장에 있지 않고 상하류 관계도 없는 집중참여 경영자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시장에서 각 시장점유율이 25% 미만

(2) 집중참여 경영자가 중국 국경 외에 합영기업을 설립하고, 합영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집중참여 경영자가 국경 외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국경 외 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2개 이상의 경영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합영기업이 집중을 통하여 그 중 1개 또는 1개 이상의 경영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

제20조 본 규정 제19조에는 부합하나, 아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영자 집중 안건은 간이안건으로 보지 않는다:

(1) 2개 이상의 경영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합영기업이 집중을 통해 그 중 1개 경영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경영자가 합영기업과 동일한 관련시장에 속하는 경쟁자이고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2) 경영자집중과 관계되는 관련 시장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3) 경영자집중이 시장진입, 기술진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경영자의 집중이 소비자와 기타 관련 경영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四) 经营者集中对消费者和其他有关经营者可能产生不利影响的；

(五) 经营者集中对国民经济发展可能产生不利影响的；

(六) 市场监管总局认为可能对市场竞争产生不利影响的其他情形。

第二十一条 市场监管总局受理简易案件后，对案件基本信息予以公示，公示期为十日。公示的案件基本信息由申报人填报。

对于不符合简易案件标准的简易案件申报，市场监管总局予以退回，并要求申报人按非简易案件重新申报。

第三章 经营者集中审查

第二十二条 市场监管总局应当自受理之日起三十日内，对申报的经营者集中进行初步审查，作出是否实施进一步审查的决定，并书面通知申报人。

市场监管总局决定实施进一步审查的，应当自决定之日起九十日内审查完毕，作出是否禁止经营者集中的决定，并书面通知申报人。符合反垄断法第三十一条第二款规定情形的，市场监管总局可以延长本款规定的审查期限，最长不得超过六十日。

第二十三条 在审查过程中，出现反垄断法第三十二条规定情形的，市场监管总局可以决定中止计算经营者集中的审查期限并书面通

知，

(5) 경영자집중이 국민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6) 시장총국이 시장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21조 시장총국은 간이 안건을 접수한 후 사건의 기본 정보를 공시하며 공시 기간은 10일이다. 공시된 사건의 기본 정보는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간이 안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간이 신고에 대해 시장총국은 이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비간이 안건으로 재신고토록 요구한다.

제3장 경영자집중 심사

제22조 시장총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영자에 대하여 신고된 경영자 집중에 대한 초보 심사를 하고 진일보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총국이 진일보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9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경영자 집중 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반독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시장총국은 이 항에서 규정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 심사 과정에서 반독점법 제32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장총국은 경영자 집중 심사기간 정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결정일로부터 심사기간 기산을 중단한다.

知申报人，审查期限自决定作出之日起中止计算。

自中止计算审查期限的情形消除之日起，审查期限继续计算，市场监管总局应当书面通知申报人。

第二十四条 在审查过程中，申报人未按照规定提交文件、资料导致审查工作无法进行的，市场监管总局应当书面通知申报人在规定期限内补正。申报人未在规定期限内补正的，市场监管总局可以决定中止计算审查期限。

申报人按要求提交文件、资料后，审查期限继续计算。

第二十五条 在审查过程中，出现对经营者集中审查具有重大影响的新情况、新事实，不经核实将导致审查工作无法进行的，市场监管总局可以决定中止计算审查期限。

经核实，审查工作可以进行的，审查期限继续计算。

第二十六条 在市场监管总局对申报人提交的附加限制性条件承诺方案进行评估阶段，申报人提出中止计算审查期限请求，市场监管总局认为确有必要的，可以决定中止计算审查期限。

对附加限制性条件承诺方案评估完成后，审查期限继续计算。

第二十七条 在市场监管总局作出审查决定之前，申报人要求撤回经营者集中申报的，应当提交书面申请并说明理由。经市场监管总局同意，申报人可以撤回申报。

심사기간 기산 중단이 해소된 날부터 심사기간은 계속 산정되며, 시장총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규정에 따라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총국은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 및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 및 수정하지 않을 경우 시장총국은 심사기간 기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신고인이 필요에 따라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한 이후 심사 기간은 계속 기산된다.

제25조 심사 과정에서 경영자 집중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황 및 사실이 나타나고 검증되지 않으면 심사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총국은 심사기간 기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심사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심사기간은 계속 기산된다.

제26조 시장총국이 신고인이 제출한 추가 제한 조건 승낙방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신고인이 심사기간 기산 중지를 요청하고, 시장총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기간 기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추가 제한 조건 승낙 계획의 평가가 완료된 후 심사기간은 계속 기산된다.

제27조 시장총국이 심사 결정을 하기 전 신고인이 경영자집중 신고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시장총국의 동의를 거쳐 신고인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集中交易情况或者相关市场竞争状况发生重大变化, 需要重新申报的, 申报人应当申请撤回。

撤回经营者集中申报的, 审查程序终止。市场监管总局同意撤回申报不视为对集中的批准。

第二十八条 在审查过程中, 市场监管总局根据审查工作需要, 可以要求申报人在规定期限内补充提供相关文件、资料, 就申报有关事项与申报人及其代理人进行沟通。

申报人可以主动提供有助于对经营者集中进行审查和作出决定的有关文件、资料。

第二十九条 在审查过程中, 参与集中的经营者可以通过信函、传真、电子邮件等方式向市场监管总局就有关申报事项进行书面陈述, 市场监管总局应当听取。

第三十条 在审查过程中, 市场监管总局根据审查工作需要, 可以通过书面征求、座谈会、论证会、问卷调查、委托咨询、实地调研等方式听取有关政府部门、行业协会、经营者、消费者、专家学者等单位或者个人的意见。

第三十一条 审查经营者集中, 应当考虑下列因素:

집중 거래상황 또는 관련 시장 경쟁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재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은 그 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영자 집중 신고를 철회한 경우 심사 절차가 중지된다. 신고철회에 대한 시장총국의 동의는 집중에 대한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 심사과정에서 시장총국은 심사 업무 수요에 따라 신고인에게 규정된 기간 내에 관련 문서·자료를 보충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인 및 대리인과 소통한다.

신고인은 경영자 집중 심사 진행 및 결정에 도움이 되는 관련 서류, 자료를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 심사과정에서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서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시장총국에 신고 사항에 대해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 시장총국은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심사과정에 시장총국은 심사 업무의 수요에 따라 서면 인터뷰, 좌담회, 시연회, 설문조사, 위탁상담, 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관련 정부부처, 업종 협회, 경영자, 소비자, 전문가 학자 등 조직 또는 개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1조 경영자집중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집중참여 경영자의 관련시장 점유율 및 시장에 대한 통제력 ;

- (一) 参与集中的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及其对市场的控制力；
- (二) 相关市场的市场集中度；
- (三) 经营者集中对市场进入、技术进步的影响；
- (四) 经营者集中对消费者和其他有关经营者的影响；
- (五) 经营者集中对国民经济发展的影响；
- (六) 应当考虑的影响市场竞争的其他因素。

第三十二条 评估经营者集中的竞争影响，可以考察相关经营者单独或者共同排除、限制竞争的能力、动机及可能性。

集中涉及上下游市场或者关联市场的，可以考察相关经营者利用在一个或者多个市场的控制力，排除、限制其他市场竞争的能力、动机及可能性。

第三十三条 评估参与集中的经营者对市场的控制力，可以考虑参与集中的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产品或者服务的替代程度、控制销售市场或者原材料采购市场的能力、财力和技术条件、掌握和处理数据的能力，以及相关市场的市场结构、其他经营者的生产能力、下游客户购买能力和转换供应商的能力、潜在竞争者进入的抵消效果等因素。

评估相关市场的市场集中度，可以考虑相关市场的经营者数量及市场份额等因素。

- (2) 相关시장의 시장집중도 ;
- (3) 경영자집중이 시장진입·기술진보에 미치는 영향 ;
- (4) 경영자집중이 소비자 및 기타 관련 경영자에 미치는 영향 ;
- (5) 경영자집중이 국민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
- (6) 고려해야 하는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

제32조 경영자 집중에 따른 경쟁의 영향을 평가할 때 경영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능력, 동기 및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경영자 집중이 상류, 하류 시장이나 연관 시장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경영자가 하나 또는 여러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 제한할 수 있는 능력·동기 및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33조 경영자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평가할 때 관련 시장의 시장점유율,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체가능성 정도,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 시장에 대한 통제 능력, 재력과 기술조건, 데이터 파악, 처리능력 및 관련 시장의 시장 구조, 기타 경영자의 생산 능력, 하류 고객의 구매력과 공급자 전환 능력, 잠재적 경쟁자들의 진입을 통한 상쇄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를 평가할 때 관련 시장의 경영자 수와 시장 점유율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第三十四条 评估经营者集中对市场进入的影响, 可以考虑经营者通过控制生产要素、销售和采购渠道、关键技术、关键设施、数据等方式影响市场进入的情况, 并考虑进入的可能性、及时性和充分性。

评估经营者集中对技术进步的影响, 可以考虑经营者集中对技术创新动力和能力、技术研发投入和利用、技术资源整合等方面的影响。

第三十五条 评估经营者集中对消费者的影响, 可以考虑经营者集中对产品或者服务的数量、价格、质量、多样化等方面的影响。

评估经营者集中对其他有关经营者的影响, 可以考虑经营者集中对同一相关市场、上下游市场或者关联市场经营者的市场进入、交易机会等竞争条件的影响。

第三十六条 评估经营者集中对国民经济发展的影响, 可以考虑经营者集中对经济效率、经营规模及其对相关行业发展等方面的影响。

第三十七条 评估经营者集中的竞争影响, 还可以综合考虑集中对公共利益的影响、参与集中的经营者是否为濒临破产的企业等因素。

第三十八条 市场监管总局认为经营者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排

제34조 경영자집중이 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경영자가 생산요소, 판매와 구매 경로, 핵심 기술, 핵심 시설, 데이터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여 진입 가능성·적시성·충분성을 고려할 수 있다.

경영자집중이 기술 진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기술 혁신 동력 및 능력,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입과 활용, 기술 자원의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제35조 경영자 집중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가격, 품질, 다양성 등에 대한 고려할 수 있다.

경영자집중이 기타 관련 경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동일 관련시장, 상류·하류 시장 또는 관련 시장 경영자의 시장진입, 거래기회 등 경쟁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제36조 경영자집중이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경제의 효율성, 경영규모 및 관련 업종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제37조 경영자 집중의 경쟁영향을 평가할 때,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38조 시장총국은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고지하고 집중 참여 경영자가 서면의

除、限制竞争效果的，应当告知申报人，并设定一个允许参与集中的经营者提交书面意见的合理期限。

参与集中的经营者的书面意见应当包括相关事实和理由，并提供相应证据。参与集中的经营者逾期未提交书面意见的，视为无异议。

第三十九条 为减少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的排除、限制竞争的效果，参与集中的经营者可以向市场监管总局提出附加限制性条件承诺方案。

市场监管总局应当对承诺方案的有效性、可行性和及时性进行评估，并及时将评估结果通知申报人。

市场监管总局认为承诺方案不足以减少集中对竞争的不利影响的，可以与参与集中的经营者就限制性条件进行磋商，要求其在合理期限内提出其他承诺方案。

第四十条 根据经营者集中交易具体情况，限制性条件可以包括如下种类：

(一) 剥离有形资产，知识产权、数据等无形资产或者相关权益(以下简称剥离业务)等结构性条件；

(二) 开放其网络或者平台等基础设施、许可关键技术(包括专利、专有技术或者其他知识产权)、终止排他性或者独占性协议、保持

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간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집중 참여 경영자의 서면의견에는 관련 사실과 이유를 포함해야 하고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집중참여 경영자가 기한이 지나도 서면 항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9조 경영자 집중이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시장총국에 제한 조건부 경영자 약속(승낙) 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총국은 공약(승낙) 방안의 유효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적기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총국은 공약 방안이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중참여 경영자와 제한 조건을 협상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기타 승낙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 경영자 집중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제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포함될 수 있다.

(1) 유형자산·지식재산, 데이터 등 무형자산·또는 관련 권익(이하, 분리 업무)의 분리 등 구조적 조건；

(2) 집중 참여 경영자가 그의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 등 기초시설 개방·핵심기술(특허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 포함) 허가·배타적, 독점적 계약 종료, 독립적 운영 유지, 플랫폼 규칙 또는 알고리즘의 수정, 상호

独立运营、修改平台规则或者算法、承诺兼容或者不降低互操作性水平等行为性条件；

(三) 结构性条件和行为性条件相结合的综合性条件。

剥离业务一般应当具有在相关市场开展有效竞争所需要的所有要素，包括有形资产、无形资产、股权、关键人员以及客户协议或者供应协议等权益。剥离对象可以是参与集中经营者的子公司、分支机构或者业务部门等。

第四十一条 承诺方案存在不能实施的风险的，参与集中的经营者可以提出备选方案。备选方案应当在首选方案无法实施后生效，并且比首选方案的条件更为严格。

承诺方案为剥离，但存在下列情形之一的，参与集中的经营者可以在承诺方案中提出特定买方和剥离时间建议：

- (一) 剥离存在较大困难；
- (二) 剥离前维持剥离业务的竞争性和可销售性存在较大风险；
- (三) 买方身份对剥离业务能否恢复市场竞争具有重要影响；
- (四) 市场监管总局认为有必要的其他情形。

第四十二条 对于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经营者

运营性水准 저하 약속 등 행태적 조건；

(3) 구조적 조건과 행태적 조건을 결합한 종합적 조건.

분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유형·무형자산, 주주권, 핵심 인원 및 고객 협약이나 공급 협약과 같은 권익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분리 대상은 경영자 집중에 참여하는 자회사, 지사 또는 업무 부문 등일 수 있다.

제41조 승낙방안(우선채택 방안)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집중 참여 경영자는 대체 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체 방안은 우선채택 방안이 실시될 수 없고, 우선채택 방안 보다 조건이 엄격할 때 시행될 수 있다.

승낙 방안이 분리(매각)이지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중 참여 경영자는 승낙방안에 특정 매수인 및 분리매각 시기를 제안할 수 있다.

- (1) 분리매각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분리 이전 분리되는 부문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유지하는데 비교적 큰 위험이 있는 경우,
- (3) 매수인이 누구인지가 분리되는 부문의 시장 경쟁력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4) 시장총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제42조 시장총국은 경영자 집중이 경쟁 배제·제한 효과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집중 참여 경영자가 제출한 제한조건부 승낙

集中, 参与集中的经营者提出的附加限制性条件承诺方案能够有效减少集中对竞争产生的不利影响的, 市场监管总局可以作出附加限制性条件批准决定。

参与集中的经营者未能在规定期限内提出附加限制性条件承诺方案, 或者所提出的承诺方案不能有效减少集中对竞争产生的不利影响的, 市场监管总局应当作出禁止经营者集中的决定。

第四十三条 任何单位和个人发现未达申报标准但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经营者集中, 可以向市场监管总局书面反映, 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

市场监管总局经核查, 对有证据证明未达申报标准的经营者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 依照本规定第八条进行处理。

第四章 限制性条件的监督和实施

第四十四条 对于附加限制性条件批准的经营者集中, 义务人应当严格履行审查决定规定的义务, 并按规定向市场监管总局报告限制性条件履行情况。

市场监管总局可以自行或者通过受托人对义务人履行限制性条件的行为进行监督检查。通过受托人监督检查的, 市场监管总局应当在审查决定中予以明确。受托人包括监督受托人和剥离受托人。

义务人, 是指附加限制性条件批准经营者集中的审查决定中要求履

방안이 집중이 발생시키는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시장총국은 제한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집중 참여 경영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조건부 건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조건부 건의가 집중이 경쟁에 대해 발생시키는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 시장총국은 마땅히 경영자 집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43조 신고 기준에 미달하지만 경쟁 배제 또는 제한 효과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 집종을 발견한 조직 또는 개인은 서면으로 시장총국에 보고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총국은 검토 후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본 규정 제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제한적 조건의 감독 및 실시

제44조 제한적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한 경영자 집중에 대해 의무자는 심사결정에서 규정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시장총국에 제한적 조건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시장총국은 의무자의 제한적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수탁인을 통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탁인의 감독검사를 통과한 경우 시장총국은 심사결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수탁인에는 감독 수탁인과 분리 수탁인이 포함된다.

의무자라 함은 경영자집중 심사결정에서 제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영자를 말한다.

行相关义务的经营者的。

监督受托人，是指受义务人委托并经市场监管总局评估确定，负责对义务人实施限制性条件进行监督并向市场监管总局报告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

剥离受托人，是指受义务人委托并经市场监管总局评估确定，在受托剥离阶段负责出售剥离业务并向市场监管总局报告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

第四十五条 通过受托人监督检查的，义务人应当在市场监管总局作出审查决定之日起十五日内向市场监管总局提交监督受托人人选。限制性条件为剥离的，义务人应当在进入受托剥离阶段三十日前向市场监管总局提交剥离受托人人选。义务人应当严格审慎选择受托人人选并对相关文件、资料的真实性、完整性、准确性负责。受托人人选应当符合下列具体要求：

- (一) 诚实守信、合规经营；
- (二) 有担任受托人的意愿；
- (三) 独立于义务人和剥离业务的买方；
- (四) 具有履行受托人职责的专业团队，团队成员应当具有对限制性条件进行监督所需的专业知识、技能及相关经验；
- (五) 能够提出可行的工作方案；
- (六) 过去五年未在担任受托人过程中受到处罚；
- (七) 市场监管总局提出的其他要求。

义务人正式提交受托人人选后，受托人人选无正当理由不得放弃参

감독 수탁인이란 의무자의 위탁을 받고 시장총국의 평가·결정을 거쳐 의무자의 제한적 조건 실시를 감독하고 시장총국에 보고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분리 수탁인이란 의무자의 위탁을 받고 시장총국의 평가·결정을 거쳐 위탁분리 단계에서 분리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시장총국에 보고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제45조 수탁인으로부터 감독 검사를 통과한 후, 의무자는 시장총국이 심사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총국에 감독수탁인 인선을 제출해야 한다. 제한적 조건이 분리매각일 경우 의무자는 수탁분리 단계에 들어가기 30일 전에 시장총국에 분리수탁인 인선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자는 수탁인을 엄정하고 신중하게 선정하고 관련 문서 및 자료의 진정성, 완전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수탁인은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1) 성실하게 규정을 지키고 규정을 준수하여 경영하는 자；
- (2) 수탁인 임무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자；
- (3) 의무자 및 분리 매각 대상 구매자와 독립된 자；
- (4) 수탁인 직책을 수행하는 전문팀이 있고, 제한적 조건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기능 및 관련 경험이 있는 팀원을 보유한 자；
- (5) 실행가능한 업무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6) 지난 5년간 수탁인으로 있는 중에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7) 시장총국이 제기한 기타 요구.

의무자가 수탁인 인선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후, 수탁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인 평가 참여를 포기할 수 없다.

与受托人评估。

一般情况下，市场监管总局应当从义务人提交的人选中择优评估确定受托人。但义务人未在规定期限内提交受托人的人选且经再次书面通知后仍未按时提交，或者两次提交的人选均不符合要求，导致监督执行工作难以正常进行的，市场监管总局可以指导义务人选择符合条件的受托人。

受托人确定后，义务人应当与受托人签订书面协议，明确各自权利和义务，并报市场监管总局同意。受托人应当勤勉、尽职地履行职责。义务人支付受托人报酬，并为受托人提供必要的支持和便利。

第四十六条 限制性条件为剥离的，剥离义务人应当在审查决定规定的期限内，自行找到合适的剥离业务买方、签订出售协议，并报经市场监管总局批准后完成剥离。剥离义务人未能在规定期限内完成剥离的，市场监管总局可以要求义务人委托剥离受托人在规定的期限内寻找合适的剥离业务买方。剥离业务买方应当符合下列要求：

- (一) 独立于参与集中的经营者；
- (二) 拥有必要的资源、能力并有意愿使用剥离业务参与市场竞争；
- (三) 取得其他监管机构的批准；
- (四) 不得向参与集中的经营者融资购买剥离业务；
- (五) 市场监管总局根据具体案件情况提出的其他要求。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장총국은 의무자가 제출한 인선 중에서 우수한 자를 평가하여 수탁인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수탁인 인선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차 서면통지 후에도 여전히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2차례 제출한 인선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독집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총국은 의무자가 조건에 부합되는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수탁인을 확정된 후 의무자는 수탁인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장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인은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의무자는 수탁인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수탁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46조 분리의무자는 심사결정에 규정된 시한 내에 적절한 구매자를 찾아 매각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총국의 승인을 거쳐 분리를 완료해야 한다. 분리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분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총국은 의무자에게 분리수탁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적절한 구매자를 찾도록 의뢰할 수 있다. 분리 업무 구매자는 반드시 다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1) 집중 참여 경영자와 독립적일 것 ;
- (2) 필요한 자원, 능력을 보유하고 분리 업무를 이용하여 시장경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것 ;
- (3) 다른 감독기구의 승인을 취득할 것 ;
- (4) 집중참여 경영자에게서 용자를 받아 분리업무를 매수해서는 안 됨 ;
- (5) 시장총국이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근거하여 제기한 기타 요구.

구매자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일부 자산이나 권익을 취득한 경

买方已有或者能够从其他途径获得剥离业务中的部分资产或者权益时，可以向市场监管总局申请对剥离业务的范围进行必要调整。

第四十七条 义务人提交市场监管总局审查的监督受托人、剥离受托人、剥离业务买方人选原则上各不少于三家。在特殊情况下，经市场监管总局同意，上述人选可少于三家。

市场监管总局应当对义务人提交的受托人及委托协议、剥离业务买方人选及出售协议进行审查，以确保其符合审查决定要求。

限制性条件为剥离的，市场监管总局上述审查所用时间不计入剥离期限。

第四十八条 审查决定未规定自行剥离期限的，剥离义务人应当在审查决定作出之日起六个月内找到适当的买方并签订出售协议。经剥离义务人申请并说明理由，市场监管总局可以酌情延长自行剥离期限，但延期最长不得超过三个月。

审查决定未规定受托剥离期限的，剥离受托人应当在受托剥离开始之日起六个月内找到适当的买方并签订出售协议。

우 자산 매각의 범위에 대해 시장총국에 필요한 권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 의무자가 시장총국에 심사를 의뢰하는 감독수탁인, 분리수탁인, 분리업무 구매자 인선은 원칙적으로 각각 3개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 상황에서 시장총국의 동의를 얻어 상기 인선은 3명 보다 적을 수 있다.

시장총국은 의무자가 제출하는 수탁인 인선 및 위탁 협의, 분리 업무 구매자 인선 및 판매 협의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심사결정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한적 조건이 분리 매각일 경우 시장총국의 상기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분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8조 심사 결정에서 분리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분리 의무자는 심사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당한 매수인을 찾아 매각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분리 의무자가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시장총국은 사정을 참작하여 자체 분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한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심사 결정에서 수탁 분리 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분리 수탁인은 분리 수탁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당한 매수인을 찾아 매각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9조 분리 의무자는 시장총국이 구매자와 매각협정을 심사 승인한

第四十九条 剥离义务人应当在市场监管总局审查批准买方和出售协议后，与买方签订出售协议，并自签订之日起三个月内将剥离业务转移给买方，完成所有权转移等相关法律程序。经剥离义务人申请并说明理由，市场监管总局可以酌情延长业务转移的期限。

第五十条 经市场监管总局批准的买方购买剥离业务达到申报标准的，取得控制权的经营管理者应当将其作为一项新的经营管理者集中向市场监管总局申报。市场监管总局作出审查决定之前，剥离义务人不得将剥离业务出售给买方。

第五十一条 在剥离完成之前，为确保剥离业务的存续性、竞争性、可销售性，剥离义务人应当履行下列义务：

(一) 保持剥离业务与其保留的业务之间相互独立，并采取一切必要措施以最符合剥离业务发展的方式进行管理；

(二) 不得实施任何可能对剥离业务有不利影响的行为，包括聘用被剥离业务的关键员工，获得剥离业务的商业秘密或者其他保密信息等；

(三) 指定专门的管理人，负责管理剥离业务。管理人在监督受托人的监督下履行职责，其任命和更换应当得到监督受托人的同意；

(四) 确保潜在买方能够以公平合理的方式获得有关剥离业务的充

후 구매자와 매각협정을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분리업무를 구매자에게 이전하여 소유권 이전 등 관련 법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분리 의무자가 이유를 소명하여 신청하면 시장총국은 상황에 따라 업무 이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 시장총국의 승인을 거쳐 분리 업무를 구매한 자는 동 구매가 경영자 집중 신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장총국에 새로운 경영자 집중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총국이 심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리 의무자는 분리 업무를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제43조 분리 완성 전에, 분리 업무의 존속성·경쟁성·매각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리 의무자는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분리업무와 보류업무 간에 상호독립을 유지하고,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분리업무 발전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진행한다 ;

(2) 분리업무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실시해서는 안 되며, 분리되는 업무의 주요 직원을 채용하는 것, 분리업무의 영업비밀 또는 비밀정보를 획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3) 전문적인 관리인을 지정하여 분리업무 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관리인은 감독수탁인의 감독 하에 직책을 이행하고, 그의 임명 및 교체는 감독수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잠재적 매수인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리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업무의 상업적 가치 및

分信息, 评估剥离业务的商业价值和发展潜力;

(五) 根据买方的要求向其提供必要的支持和便利, 确保剥离业务的顺利交接和稳定经营;

(六) 向买方及时移交剥离业务并履行相关法律程序。

第五十二条 监督受托人应当在市场监管总局的监督下履行下列职责:

(一) 监督义务人履行本规定、审查决定及相关协议规定的义务;

(二) 对剥离义务人推荐的买方人选、拟签订的出售协议进行评估, 并向市场监管总局提交评估报告;

(三) 监督剥离业务出售协议的执行, 并定期向市场监管总局提交监督报告;

(四) 协调剥离义务人与潜在买方就剥离事项产生的争议;

(五) 按照市场监管总局的要求提交其他与义务人履行限制性条件有关的报告。

발전 잠재력을 평가한다 ;

(5)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분리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안정적 경영을 확보한다.

(6) 매수인에게 신속하게 분리업무를 인계하고 관련 법률절차를 이행한다.

제52조 감독수탁인은 시장총국의 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분리 의무자가 본 규정과 심사 결정 및 관련 협정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해 감독한다 ;

(2) 분리 의무자가 추천한 구매자 인선, 체결하려는 매각협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시장총국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

(3) 분리업무 매각협정 집행을 감독하고 시장총국에 정기적으로 감독보고를 제출한다 ;

(4) 분리의무자와 잠재적 매수인의 분리사항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한다 ;

(5) 시장총국의 요구에 응하여 의무자의 제한조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수탁인은 시장총국의 동의 없이 직책 수행 과정에 시장총국에 제

未经市场监管总局同意，监督受托人不得披露其在履行职责过程中向市场监管总局提交的各种报告及相关信息。

第五十三条 在受托剥离阶段，剥离受托人负责为剥离业务找到买方并达成出售协议。

剥离受托人有权以无底价方式出售剥离业务。

第五十四条 审查决定应当规定附加限制性条件的期限。

根据审查决定，限制性条件到期自动解除的，经市场监管总局核查确认，义务人未违反审查决定的，限制性条件自动解除。义务人存在违反审查决定情形的，市场监管总局可以适当延长附加限制性条件的期限，并及时向社会公布。

根据审查决定，限制性条件到期后义务人需要申请解除的，义务人应当提交书面申请并说明理由。市场监管总局评估后决定解除限制性条件的，应当及时向社会公布。

限制性条件为剥离，经市场监管总局核查确认，义务人履行完成所有义务的，限制性条件自动解除。

第五十五条 审查决定生效期间，市场监管总局可以主动或者应义务人申请对限制性条件进行重新审查，变更或者解除限制性条件。市场

출된 각종 보고와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53조 수탁 분리 단계에서 분리수탁인은 분리 업무를 위해 매수인을 찾아 매각협약을 달성하는 것을 담당한다.

분리수탁인은 최저가격으로 분리업무를 매각할 권리가 있다.

제54조 심사 결정은 제한 조건을 부가하는 기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심사 결정에 근거한 제한 조건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 시장총국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 의무자가 심사결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제한적 조건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의무자가 심사결정을 위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시장총국은 제한 조건의 부가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적기에 사회에 공포할 수 있다.

심사 결정에 따라 제한 조건이 만료된 후 의무자가 해제를 신청해야 할 경우 의무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장총국은 이를 평가해 제한 조건 해제를 결정하면 적시에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한 조건이 분리 매각이고 시장총국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 의무자가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한 조건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제55조 심사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 후, 시장총국은 직권 또는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제한 조건을 다시 심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장총국은 제한 조건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하였을 경우 적시에

监管总局决定变更或者解除限制性条件的，应当及时向社会公布。

市场监管总局变更或者解除限制性条件时，应当考虑下列因素：

- (一) 集中交易方是否发生重大变化；
- (二) 相关市场竞争状况是否发生实质性变化；
- (三) 实施限制性条件是否无必要或者不可能；
- (四) 应当考虑的其他因素。

第五章 对违法实施经营者集中的调查

第五十六条 经营者集中达到申报标准，经营者未申报实施集中、申报后未经批准实施集中或者违反审查决定的，依照本章规定进行调查。

未达申报标准的经营者集中，经营者未按照本规定第八条进行申报的，市场监管总局依照本章规定进行调查。

第五十七条 对涉嫌违法实施经营者集中，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市场监管总局举报。市场监管总局应当为举报人保密。

举报采用书面形式，并提供举报人和被举报人基本情况、涉嫌违法实施经营者集中的相关事实和证据等内容的，市场监管总局应当进行必要的核查。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시장총국은 제한 조건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1) 집중거래 당사자에게 중대한 변화가 발생 했는지 여부 ;
- (2)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 ;
- (3) 제한적 조건 실시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지 여부 ;
- (4) 마땅히 고려해야 하는 기타 요소.

제5장 위법한 경영자 집중 실시에 대한 조사

제56조 경영자 집중이 신고기준에 도달하였음에도 경영자가 집중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집중을 실시하였거나 심사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자 집중이 있고, 경영자가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장총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제57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위법한 경영자 집중 실시 혐의에 대하여 시장총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시장총국은 신고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신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기본 상황·위법한 경영자집중 실시 혐의의 관련 사실 및 증거 등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시장총국은 필요한 확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서면 형태의 실명 신고의 경우 시장총국은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신

对于采用书面形式的实名举报，市场监管总局可以根据举报人的请求向其反馈举报处理结果。

对举报处理工作中获悉的国家秘密以及公开后可能危及国家安全、公共安全、经济安全、社会稳定的信息，市场监管总局应当严格保密。

第五十八条 对有初步事实和证据表明存在违法实施经营者集中嫌疑的，市场监管总局应当予以立案，并书面通知被调查的经营者。

第五十九条 被调查的经营者应当在立案通知送达之日起三十日内，向市场监管总局提交是否属于经营者集中、是否达到申报标准、是否申报、是否违法实施等有关文件、资料。

第六十条 市场监管总局应当自收到被调查的经营者依照本规定第五十九条提交的文件、资料之日起三十日内，对被调查的交易是否属于违法实施经营者集中完成初步调查。

属于违法实施经营者集中的，市场监管总局应当作出实施进一步调查的决定，并书面通知被调查的经营者。经营者应当停止违法行为。

不属于违法实施经营者集中的，市场监管总局应当作出不实施进一步调查的决定，并书面通知被调查的经营者。

고 처리 결과를 피드백할 수 있다.

시장총국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기밀과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안전 및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엄격히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58조 초보사실 및 증거로 위법한 경영자집중 실시 혐의가 있는 경영자집중에 대하여, 시장총국은 입안하고 피조사경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9조 피조사경영자는 입안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장총국에 조사를 받는 거래가 경영자집중에 속하는지 여부·신고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 위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문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시장총국은 피조사경영자가 이 규정 제5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받는 거래가 위법한 경영자집중 실시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초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위법한 경영자 집중을 실시하였을 경우 시장총국은 진일보조사를 진행하고 피조사경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경영자집중 실시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시장총국은 진일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피조사경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第六十一条 市场监管总局决定实施进一步调查的, 被调查的经营者应当自收到市场监管总局书面通知之日起三十日内, 依照本规定关于经营者集中申报文件、资料的规定向市场监管总局提交相关文件、资料。

市场监管总局应当自收到被调查的经营者提交的符合前款规定的文件、资料之日起一百二十日内, 完成进一步调查。

在进一步调查阶段, 市场监管总局应当按照反垄断法及本规定, 对被调查的交易是否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进行评估。

第六十二条 在调查过程中, 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有权陈述意见。市场监管总局应当对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进行核实。

第六十三条 市场监管总局在作出行政处罚决定前, 应当告知被调查的经营者拟作出的行政处罚内容及事实、理由、依据, 并告知被调查的经营者依法享有的陈述、申辩、要求听证等权利。

被调查的经营者自告知书送达之日起五个工作日内, 未行使陈述、申辩权, 未要求听证的, 视为放弃此权利。

第六十四条 市场监管总局对违法实施经营者集中应当依法作出处

제61조 시장총국이 진일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조사경영자는 시장총국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규정의 경영자집중 신고문서자료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관련 문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총국은 피조사경영자가 제출한 본 규정에 부합하는 문서·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내에 진일보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진일보 조사 단계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및 본 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는 거래가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62조 조사과정에서 피조사경영자·이해관계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시장총국은 피조사경영자·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사실·이유 및 증거에 대해 확인조사를 해야 한다.

제55조 시장총국은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과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법에 따라 진술, 변호, 청문요청 등의 권리를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 대상 사업자가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진술·변론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문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4조 시장총국은 위법한 경영자집중 실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리 결정을 내리고 사회에 공포할 수 있다.

理决定，并可以向社会公布。

第六十五条 市场监管总局责令经营者采取必要措施恢复到集中前状态的，相关措施的监督和实施参照本规定第四章执行。

第六章 法律责任

第六十六条 经营者违反反垄断法规定实施集中的，依照反垄断法第五十八条规定予以处罚。

第六十七条 对市场监管总局依法实施的审查和调查，拒绝提供有关材料、信息，或者提供虚假材料、信息，或者隐匿、销毁、转移证据，或者有其他拒绝、阻碍调查行为的，由市场监管总局责令改正，对单位处上一年度销售额百分之一以下的罚款，上一年度没有销售额或者销售额难以计算的，处五百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八条 市场监管总局在依据反垄断法和本规定对违法实施经营者集中进行调查处理时，应当考虑集中实施的时间，是否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的效果及其持续时间，消除违法行为后果的情况等因素。

当事人主动报告市场监管总局尚未掌握的违法行为，主动消除或者减轻违法行为危害后果的，市场监管总局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第三十二条从轻或者减轻处罚。

제65조 시장총국이 경영자에게 집중 이전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관련 조치의 감독 및 시행은 이 규정 제4장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66조 경영자가 반독점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집종을 실시한 경우 반독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7조 시장총국이 법에 따라 실시한 심사 및 조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 파기 또는 이전하거나 기타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시장총국은 시정을 명령하고, 조직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액의 1% 이하,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개인은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시장총국은 반독점법과 이 규정에 따라 위법 시행 경영자 집종을 조사하고 처리할 때 집중 시행 시기, 경쟁 배제 및 제한 효과 및 지속 기간, 위법 행위 결과를 제거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시장총국이 파악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보고하고 위법행위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시장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감경한다.

第六十九条 市场监管总局依据反垄断法和本规定第六十六条、第六十七条对经营者予以行政处罚的，依照反垄断法第六十四条和国家有关规定记入信用记录，并向社会公示。

第七十条 申报人应当对代理行为加强管理并依法承担相应责任。

申报代理人故意隐瞒有关情况、提供虚假材料或者有其他行为阻碍经营者集中案件审查、调查工作的，市场监管总局依法调查处理并公开，可以向有关部门提出处理建议。

第七十一条 受托人不符合履职要求、无正当理由放弃履行职责、未按要求履行职责或者有其他行为阻碍经营者集中案件监督执行的，市场监管总局可以要求义务人更换受托人，并可以对受托人给予警告、通报批评，处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二条 剥离业务的买方未按规定履行义务，影响限制性条件实施的，由市场监管总局责令改正，处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三条 违反反垄断法第四章和本规定，情节特别严重、影响特别恶劣、造成特别严重后果的，市场监管总局可以在反垄断法第五十八条、第六十二条规定和本规定第六十六条、第六十七条规定的罚款数额的二倍以上五倍以下处以罚款。

제69조 시장총국이 반독점법 및 본 규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경영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반독점법 제64조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신용 기록에 기록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0조 신고인은 대리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신고 대리인이 고의로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고 경영자 집중 사건의 심사·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총국은 법에 따라 조사·처리·공개하고 관련 부서에 처리 건의를 할 수 있다.

제71조 수탁인이 직무수행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포기하거나 요구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경영자 집중 사건의 감독 및 집행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시장총국은 의무자에게 수탁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인에게 경고, 통보 및 비판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2조 분리 업무의 구매자가 규정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한적 조건의 실시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시장총국은 그 시정을 명하고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3조 반독점법 제4장 및 이 규정 위반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고 영향이 특히 나쁘며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시장총국은 반독점법 제58조 및 제62조 규정과 본 규정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벌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4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

第七十四条 反垄断执法机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执法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的，依照有关规定处理。

反垄断执法机构在调查期间发现的公职人员涉嫌职务违法、职务犯罪问题线索，应当及时移交纪检监察机关。

第七章 附则

第七十五条 市场监管总局以及其他单位和个人对于知悉的商业秘密、未披露信息、保密商务信息、个人隐私和个人信息承担保密义务，但根据法律法规规定应当披露的或者事先取得权利人同意的除外。

第七十六条 本规定对违法实施经营者集中的调查、处罚程序未作规定的，依照《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规定》执行，有关时限、立案、案件管辖的规定除外。

在审查或者调查过程中，市场监管总局可以组织听证。听证程序依照《市场监督管理行政许可程序暂行规定》《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听证办法》执行。

第七十七条 对于需要送达经营者的书面文件，送达方式参照《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规定》执行。

第七十八条 本规定自2023年4月15日起施行。2020年10月23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30号公布的《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同时废止。

히 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반독점법 집행 기관이 조사 기간 동안 발견한 공직자의 직무 위반 및 직무 범죄 혐의 단서는 즉시 규율 검사 및 감독 기관에 인계되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75조 시장총국, 기타 조직 및 개인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 비밀, 미공개 정보, 경영 기밀 정보, 개인 사생활 및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76조 이 규정에서 위법 실시 경영자집중에 대한 조사 및 처벌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관련 기한, 사건 접수 및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심사 또는 조사 과정에 시장총국은 청문회를 조직할 수 있다. 청문절차는 <시장감독관리 행정허가절차 잠정규정>과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 청문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77조 경영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서면문서의 송달방식은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78조 이 규정은 2023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 10월 2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30호로 공포된 '경영자 집중 심사에 관한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